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40
----------	-------

발의연월일 : 2022. 4. 20.

발 의 자 : 이명수 · 김상훈 · 류성걸
박완수 · 배현진 · 서일준
성일종 · 윤두현 · 최춘식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규정하여 특정 분야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국을 관할하는 선거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1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 선거법원과”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선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별표 1 중 특허법원란 다음에 선거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법원	서울특별시
------	-------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선거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별표 11]

선거법원의 관할구역

명 칭	관할구역
선거법원	전 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u>회생법원과</u>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제2조(설치) ① ----- ----- ----- <u>회생법원, 선거법원과</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제4조(관할구역) ----- -----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u>9. 선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u>
	<u>11</u>